|  |  |  |
| --- | --- | --- |
| **2.6.9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추진할 데 대한 주택 및 도농건설부의 통지**  建科[2009] 제109호  각 성․자치구 주택 및 도농건설청, 직할시와 계획 단독배정 시 건설위(건설국), 신쟝(新疆)　생산건설병단 건설국, 관련단위:  『에너지절약, 가스배방감소 종합성 작업방안 발부와 관련한 국무원의 통지』내용을 관철함으로써 녹색건물에 대한 각 지방의 열성을 발휘시키고 동원하며 녹색건물의 전면적이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적으로 녹색건물의 전반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작업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녹색건물 추진을 위한 건설사업의 일정한 기초가 있고 『녹색건물 평가기준』을 제정, 출범하여 당지 녹색건물을 평가할 기준이 있는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 단독배정 시는 모두 자지방의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할 수 있다.  2.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는 성(자치구, 시)은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업무를 부담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녹색건물 평가, 표식과 관련한 기술수준이 있는 단위가 있으며 녹색건물 평가, 표식 평의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주택 및 도농건설부 과기발전촉진센터에 위임하여 전국의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에 대한 일상관리와 3개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작업을 부담하게 한다. 각 성(자치구, 시)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는 자기지역 1, 2 스타급 녹색건물의 평가, 표식작업을 책임지고 녹색건물 평가, 표식에 대한 일상관리기구와 기술의뢰단위를 확정하며 평가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표식기구와 조직 및 평가, 표식 작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4. 녹색건물 평가, 표식 마크와 증서는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제정하고 통일적인 양식과 내용을 정한다. 각 성(자치구, 시)에서 평가, 확정한 1, 2 스타급 녹색건물은 주택 및 도농건설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표식 마크와 증서의 일련번호를 통일하고 관리한다. 주택 및 도농건설부 과기발전촉진센터가 책임지고 마크와 증서의 통일양식을 제공한다.  5.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려는 성(자치구, 시)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는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방법(시범)』(별첨 참조) 요구에 따라 신청하고 녹색건물 평가, 표식의 일상작업 관리기구, 기술의뢰단위, 전문가위원회 구성 등 기본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확인하면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할 수 있다.  연락방법: 주택 및 도농건설부 건물에너지절약과 과기사(司)　高雪峰  전 화: 010-58933823  주택 및 도농건설부 과기발전촉진센터 宋　 凌,　馬欣伯  전 화: 010-58933934, 58933183, 58933924  별첨: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방법(시범)  중화인민공화국 주택 및 도농건설부  2009년 6월 18일  별첨: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방법(시범)**  녹색건물사업을 적극 발전시킬 데 대한 각 지방의 열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동원하며 각 지방에서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도록 권장하여 녹색건물이 전국범위에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방법(시범)』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1조**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전국 녹색건물의 평가, 표식 작업을 책임지고 3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심의를 알선하며 관리 제도를 검토, 제정하고 표식증서와 마크의 양식과 내용을 통일하고 제작을 감독하며 각 스타급 표식과 증서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각 지방 1, 2 스타급 녹색건물의 평가, 표식 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2조**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조건이 되는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 내에서 1 스타급,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게 한다. 각 지방의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은 당지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가 책임진다.  **제3조** 지방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고 저하는 지역에서는 당지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가 주택 및 도농건설부에 신청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는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중국도시과학연구회가 당지에 설립한 녹색건물전문위원회 또는 당지에서 설립한 녹색건축학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신청하는 지방은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 단독배정 시로서,  (2) 『녹색건물 평가표준』에 의거하여 당지 녹색건물 평가표준을 제정하여 출범하였고,  (3) 지방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위한 일상 관리기구를 확정함과 동시에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방법(시범)』에 의거하여 작업방안이나 실시세칙을 제정하였으며,  (4) 평가, 표식의 심의를 부담할 수 있는, 요구에 부합하는 녹색건물 평가, 표식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였어야 한다.  **제6조** 지방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의뢰단위는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일정한 녹색건물 설계 및 연구 실력을 갖추고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과 간련한 전문기술진을 보유하고 부 고급직명을 취득한 직원이 30% 이상을 차지하며,  (2) 과학연구단위인 경우에는 국가실험실인가(CHAS) 또는 계량인증(CMA)을 받은 실험실과 검측능력을 보유하고,  (3) 설계단위인 경우에는 A급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녹색건물 평가, 표식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은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전문가위원회는 기획, 구조, 난방, 상하수도, 전기, 건축물리 등 7개 전문팀을 포함하고 매 전문팀은 최소 3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전문가위원회는 주임위원 1명과 7개 전문팀을 책임지는 부 주임위원 7명이 있어야 한다.  (3) 전문가위원회는 당해전문 고급직명을 보유함과 아울러 보다 풍부한 녹색건물이론과 실천경험이 있고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련 관리규정과 기술표준을 숙지하며 양호한 직업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4) 전문가위원회는 초빙제도를 실시한다.  **제8조**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건물 평가, 표식 일상관리를 책임질 기구와 기술의뢰단위의 기본상황, 전문가위원회 구성원명부 및 관련이력,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 실시방안 등을 망라한 신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신청서를 심사한다.  **제10조** 동의를 받고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는 지역은 주택 및 도농건설부의 지도하에서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방법(시범)』에 근거하고 당지실정에 결부시켜 실시세칙을 제정하며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리기구, 기술의뢰단위, 전문가위원회를 지도하여 관할구역 내의 1, 2 스타급 녹색건물 평가, 표식작업을 전개한다.  **제11조**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은 규정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공정, 공개, 공평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녹색건물 평가, 표식신청은 자원원칙에 준하며 신청단위가 신청하고 신청을 접수한 평가, 표식 관리단위는 상응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평가과정에 각종명목을 내세워 함부로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13조** 각지 주택 및 도농건설 행정주관부서는 평가, 표식의 과학성, 공정성, 공평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평의에 통과한 프로젝트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성급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는 프로젝트 평의상황 및 공시하여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지만 확인하여 통과하기로 하고 마크를 발급하게 되는 프로젝트 명세서, 프로젝트 소개요지, 전문가 평의의견의 사본, 이의가 제기된 프로젝트의 처리상황 등 관련 자료를 일괄 주택 및 도농건설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평의에 통과한 프로젝트는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통일 일련번호를 달고 성급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가 일련번호와 통일적으로 규정한 내용과 양식에 따라 증서와 마크(양식은 별첨참조)를 제작하여 발급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녹색건물 평가는 기획, 설계단계와 준공, 사용투입단계로 나눈다. 기획, 설계단계 녹색건물표식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준공, 사용투입단계 녹색건물표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16조**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주택 및 도농건설부 과기발전촉진센터에 위임하여 관련 관리와 평의원의 훈련 및 검증작업을 전개하게 하고 각 지방 녹색건물 평가, 표식 관련단위와의 관계를 조율한다.  **제17조**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각 지방의 녹색건물 경가, 표식 작업을 감독, 검사하고 수시로 각 지방이 평의한 녹색건물표식 프로젝트를 표본 검사하는 동시에 사회의 감독을 접수한다.  **제18조** 감독검사과정에서 또는 투서에 의하여 규정절차를 위반하고 평가하였음을 발견하였거나 평의과정에 비과학적이거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 정돈개정을 명하고 나아가서는 평의자격을 취소한다. 평의자격을 취소당한 지역은 평의자격 취소일로부터 1년 내에는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을 전개하지 못한다.  **제19조** 각 지방에서는 본 지역 녹색건물 평가, 표식 작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심의에 통과한 프로젝트를 검사하며 적시에 경험을 총괄하여 관련 상황을 주택 및 도농건설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이 방법은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해석한다. |  | **住房和城乡建设部关于推进**  **一二星级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的通知**  建科[2009]109号  各省、自治区住房和城乡建设厅，直辖市、计划单列市建委（建设局），新疆生产建设兵团建设局，有关单位：  　　为贯彻落实《国务院关于印发节能减排综合性工作方案的通知》精神，充分发挥和调动各地发展绿色建筑的积极性，促进绿色建筑全面、快速发展，提高我国绿色建筑整体水平，现将大力推进一二星级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有关事项通知如下：  　　一、有一定的发展绿色建筑工作基础，依据《绿色建筑评价标准》制定出台了当地绿色建筑评价相关标准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均可开展本地区一、二星级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  　　二、开展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的省（区、市）要有能够具体承担绿色建筑评价标识管理工作的机构，有绿色建筑评价标识的技术支撑单位，并成立开展绿色建筑评价标识评审的专家委员会。  　　三、我部委托住房和城乡建设部科技发展促进中心承担全国绿色建筑评价标识的日常管理和三星级绿色建筑评价标识的评审组织工作。各省（区、市）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负责本地区一、二星级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并选择确定绿色建筑评价标识的日常管理机构、技术依托单位，组建评价专家委员会，加强对评价标识机构、组织和评价标识工作的监督管理。  　　四、绿色建筑评价标识的标志和证书，由我部监制，规定统一格式和内容。各省（区、市）评定的一、二星级绿色建筑评价标识应报我部备案，由我部对标志和证书统一编号管理。部科技发展促进中心负责提供标志和证书的统一式样。  　　五、拟开展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的省（区、市）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可根据《一二星级绿色建筑评价标识管理办法（试行）》（见附件）的要求提出申请，并提交承担绿色建筑评价标识日常工作的管理机构、技术依托单位和专家委员会构成等基本情况。经我部确认后开展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  　　联系方式：住房和城乡建设部建筑节能与科技司　高雪峰  　　电　　话：010-58933823  　　住房和城乡建设部科技发展促进中心　宋凌　马欣伯  　　电　　话：010-58933934、58933183，58933924  　　附件：一二星级绿色建筑评价标识管理办法（试行）  中华人民共和国住房和城乡建设部  二○○九年六月十八日  附件：  **一二星级绿色建筑评价标识管理办法**  **（试行）**  　　为充分发挥和调动各地发展绿色建筑事业的积极性，鼓励各地开展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促进绿色建筑在全国范围内快速健康发展，根据《绿色建筑评价标识管理办法（试行）》，制定本办法。  **第一条**　住房和城乡建设部负责指导全国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和组织三星级绿色建筑评价标识的评审，研究制定管理制度，监制和统一规定标识证书、标志的格式、内容，统一管理各星级的标志和证书；指导和监督各地开展一星级和二星级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  **第二条**　住房和城乡建设部选择确定具备条件的地区，开展所辖区域一星级和二星级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各地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由当地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负责。  **第三条**　拟开展地方绿色建筑评价标识的地区，需由当地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向住房和城乡建设部提出申请，经同意后开展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  **第四条**　地方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可委托中国城市科学研究会在当地设立的绿色建筑专委会或当地成立的绿色建筑学协会承担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  **第五条**　申请开展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的地区应具备以下条件：  　　（一）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城市；  　　（二）依据《绿色建筑评价标准》制定出台了当地的绿色建筑评价标准；  　　（三）明确了开展地方绿色建筑评价标识日常管理机构，并根据《绿色建筑评价标识管理办法（试行）》制定了工作方案或实施细则；  　　（四）成立了符合要求的绿色建筑评价标识专家委员会，承担评价标识的评审。  **第六条**　各地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的技术依托单位应满足以下条件：  　　（一）具有一定从事绿色建筑设计与研究的实力，具有进行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所涉及专业的技术人员，副高级以上职称的人员比例不低于30％；  　　（二）科研类单位应拥有通过国家实验室认可（CNAS）或计量认证（CMA）的实验室及测评能力；  　　（三）设计类单位应具有甲级资质。  **第七条**　组建的绿色建筑评价标识专家委员会应满足以下条件：  　　（一）专家委员会应包括规划与建筑、结构、暖通、给排水、电气、建材、建筑物理等七个专业组，每一专业组至少由三名专家组成；  　　（二）专家委员会设一名主任委员、七名分别负责七个专业组的副主任委员；  　　（三）专家委员会专家应具有本专业高级专业技术职称，并具有比较丰富的绿色建筑理论知识和实践经验，熟悉绿色建筑评价标识的管理规定和技术标准，具有良好的职业道德；  　　（四）专家委员会委员实行聘任制。  **第八条**　具备条件的地区申请开展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应提交申请报告，包括负责绿色建筑评价标识日常管理工作的机构和技术依托单位的基本情况，专家委员会组成名单及相关工作经历，开展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实施方案等材料。  **第九条**　住房和城乡建设部对拟开展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的申请进行审查。  **第十条**　经同意开展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的地区，在住房和城乡建设部的指导下，按照《绿色建筑评价标识管理办法（试行）》结合当地情况制定实施细则，组织和指导绿色建筑评价标识管理机构、技术依托单位、专家委员会，开展所辖区域一、二星级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  **第十一条**　开展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应按照规定的程序，科学、公正、公开、公平进行。  **第十二条**　申请绿色建筑评价标识遵循自愿的原则，申请单位提出申请并由评价标识管理机构受理后应承担相应的义务。组织评审过程中，严禁以各种名义乱收费。  **第十三条**　各地住房和城乡建设行政主管部门对评价标识的科学性、公正性、公平性负责，通过评审的项目要进行公示。  **第十四条**　省级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应将项目评审情况及经公示无异议或有异议经核实通过评定、拟颁发标识的项目名单、项目简介、专家评审意见复印件、有异议项目处理情况等相关资料一并报住房和城乡建设部备案。通过评审的项目由住房和城乡建设部统一编号，省级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按照编号和统一规定的内容、格式，制作颁发证书和标志（样式见附件），并公告。  **第十五条**　绿色建筑评价分为规划设计阶段和竣工投入使用阶段标识。规划设计阶段绿色建筑标识有效期限为一年，竣工投入使用阶段绿色建筑标识有效期限为三年。  **第十六条**　住房和城乡建设部委托住房和城乡建设部科技发展促进中心组织开展地方相关管理和评审人员的培训考核工作，负责与各地绿色建筑评价标识相关单位进行沟通与联系。  **第十七条**　住房和城乡建设部对各地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进行监督检查，不定期对各地审定的绿色建筑评价标识项目进行抽查，同时接受社会的监督。  **第十八条**　对监督检查中和经举报发现未按规定程序进行评价，评审过程中存在不科学、不公正、不公平等问题的，责令整改直至取消评审资格。被取消评审资格的地区自取消之日起1年内不得开展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  **第十九条**　各地要加强对本地区绿色建筑评价标识工作的监督管理，对通过审定标识的项目进行检查，及时总结工作经验，并将有关情况报住房和城乡建设部。  **第二十条**　本办法由住房和城乡建设部负责解释。 |